

2026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

FTA 컨설팅 중복지원을 방지하고, 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컨설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수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

□ 사업기간

- ▶ 사업 공고일 ~ 자금 소진 시 까지

□ 지원대상 및 규모

- ▶ 경북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 - '중소기업 기본법' 제2조
 - ①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**HS Code(6단위)가 다른 품목**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**지원 가능**
 - ②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**HS Code(6단위)가 같은 품목**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**지원 불가**
 - ③ 경북센터 중점지원 업종(기계/플라스틱/고무/농산물/식품) 및 수출 초보 기업(신규 수출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, 증빙서류 필수) 우선 선발

* 예산 지원 불가능한 경우 상주 관세사 컨설팅으로 대체

- ▶ 수행가능 지역 : 구미, 경산, 김천, 칠곡, 고령, 성주, 상주, 문경, 예천, 안동, 영주

(상기 외 지역의 경우,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, 해당 사업 마감 시 신청 가능)

- ▶ 지원규모 : 총 65개사

지원 내용	지원기업 수	비고
수출기업 맞춤 컨설팅	8개사	
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	18개사	
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	14개사	
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	25개사	

□ 컨설팅 신청

- ▶ **업체가 등록된 전문가 POOL중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(기업분담금 없음)**
 - 센터에서 임의 배분이나 지정배분은 없음
 - (업체로부터 신청만 접수받음, 관세법인·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)**
- ▶ **안내사항**
 - 업체 1개사당 1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
 - 센터 상주 관세사/담당자의 사전 진단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
 - **컨설팅 중 센터 상주 관세사/담당자 업체 1회 이상 방문(필수)**

□ 컨설팅 진행

- ▶ **컨설팅 시행승인일 : 경북FTA센터에서 사업시행을 통지(e-mail)한 날**
- ▶ **컨설팅 완료일 : 경북FTA센터에서 검토완료를 통지(e-mail)한 날**
- ▶ **사업 수행 중 컨설팅 분야 및 교육 주제, 수행 컨설턴트 임의변경 불가**
 - 센터 상주 관세사의 사전 진단 후 지원여부,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 결정
 -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
- ▶ **사업 수행 중 폐업 또는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**
 - 사업 수행 중 폐업 시 :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
 - 사업 수행 중 퇴사 시 : 퇴사자는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. 센터와 협의 후 다른 컨설턴트로 대체가능
- ▶ **1명의 컨설턴트는 최대 3개 기업 이내로 컨설팅 수행 가능**
 - 동시 수행할 경우, 컨설팅 수행 MD는 중복 금지 (1MD에 1개사만 수행 가능)
 - 컨설팅 완료 시 센터에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후 추가 컨설팅 가능
다만,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의 경우 인증서 발급 시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초안과 인증신청 내역을 센터에 제출 시 추가 컨설팅 가능
- ▶ **컨설팅 수행 후 기업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불만이 제기될 경우**
 - 컨설팅 추가 보완 조치하며,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컨설팅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음
- ▶ **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(지원)하거나 결과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**
 -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사업비 환수 조치 및 추후 사업참여 배제
 - * 기관 간에 컨설팅 중복 체크 실시 : 산업통상자원부/관세청/무역협회 공통사항

▶ 사업수행 보고는 **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**를 E-mail로 센터에 송부하고, 센터에서 보고서 검토 완료 통지 시 최종 완료된 원본은 스캔파일 (PDF 형식, E-mail송부)을 제출

▶ **컨설팅 유형별 수행비**

-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: 3MD(3일차), 1,500,000원(VAT 포함)
-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: 2MD(2일차), 1,000,000원(VAT 포함)
-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: 2MD(2일차), 1,000,000원(VAT 포함)
-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: 4MD(4일차), 2,000,000원(VAT 포함)

▶ **컨설팅 기간은 최대 2개월 이하로 수행**

- 컨설팅 시행승인일로부터 **2개월이 초과될** 경우 센터에 **연장 또는 취소 신청서**를 제출하여 **연장 또는 취소** 가능
 - * 컨설팅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(20일 연장) 사업종료일(10월 30일) 30일 이전에는 연장신청 불가
- 사업종료일(10월 30일)까지 컨설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서 임의조정

▶ **컨설팅 수행 전, 추진계획서 작성 (붙임 3 참조)**

(시행 승인일 통지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업체에 다른 관세법인·관세사무소 선택 안내)

-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서 작성 제출

▶ **컨설팅 기간 중 센터 상주 관세사/담당자의 업체 방문이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함**

- 방문 거부 또는 방문을 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

▶ **사업비 지급은 컨설팅 완료 후 센터로부터 최종 완료 통보 받은 경우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**

-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확인을 통한 지급 진행
- 사업비 지급 반기별로 합산하여 진행 예정(6월/10월 예정)

▶ **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(붙임 3 참조)**

- 유형별 **결과보고서** 작성 후 아래 **산출물과 함께 제출**

① **수출기업 맞춤 컨설팅**

- 1) **기관발급** : FTA 원산지증명서, 업체 만족도 조사표 (붙임 3)
- 2) **자율발급** : FTA 원산지증명서(원산지신고서)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, 업체 만족도 조사표 (붙임 3)

② **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**

-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결과서, 원산지(포괄)확인서 및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, 업체 만족도 조사표 (붙임 4)

③ **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**

- 무역서류, FTA PASS 모의발급 원산지증명서 1부, 업체 만족도 조사표 (붙임 4)

④ **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**

-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, 업체 만족도 조사표 (붙임 4)